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432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432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34475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변론 종결2022. 1. 19.

판결 선고2022. 2. 16.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34475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 피고는 D에게 피고와 A 사이에 2017. 2. 17. 체결된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19. 6. 19.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함에 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그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안에 관한 부분, 즉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 2019. 6. 11."과 "이 법원에" 사이에 "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4189호 사건을 이송받은"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4 내지 6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금정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4.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액배상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A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D에 대하여 3,5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수도료와 전기료 합계 453,224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이에 D는 A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돈 합계 3,953,224원을 상계하였는데, 위 3,953,224원은 피고가 양도받지 않았거나 피고가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 할 범위에서 위

3,953,224원은 공제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D에 대하여 3,5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수도료와 전기료 합계 453,224원을 미납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은명

판사오영두

판사김상현

별지